

7.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5,425호 1997. 12. 13

주요 골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보육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함(법 제18조제1항).

개정 이유

현재 유아원의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용 기자재의 구입 시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아동의 보육여건의 개선과 보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보육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학교”를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건에

서 “보육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6호중 “학교교육용”을 “학교교육용, 보육시설보육용”으로 하며, 동항제17조중 “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을 “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